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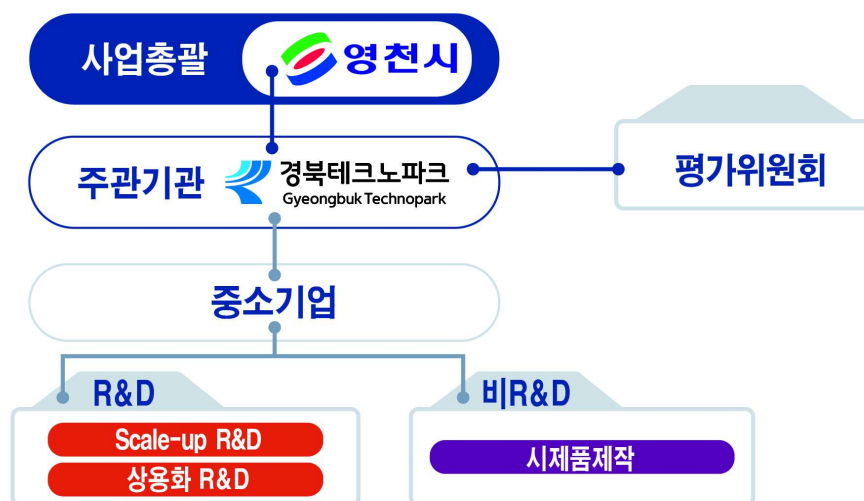
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

영천시 지역 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『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』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6년 7월 29일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(요약)

- 가. 사 업 명 :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
- 나. 사업기간(지원기간) : 협약체결 ~ 2026. 11. 30.
- 다. 총사업비(지원금) : 금110,000,000원(금일억일천만원정)
- 라. 주요내용 : 영천 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R&D 및 비R&D 사업화 지원
- 마. 지원대상 : 영천시 소재 1년 이상,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
- 바. 추진체계



II

지원유형

가. 지원유형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부내용	최대 지원금	모집 건수	비고
R&D	☐ Scale-up R&D	50,000	2건 정도	
	☐ 상용화 R&D	35,000		
비R&D	☐ 시제품 제작	20,000	2건 정도	

※ R&D / 비R&D 분야 교차 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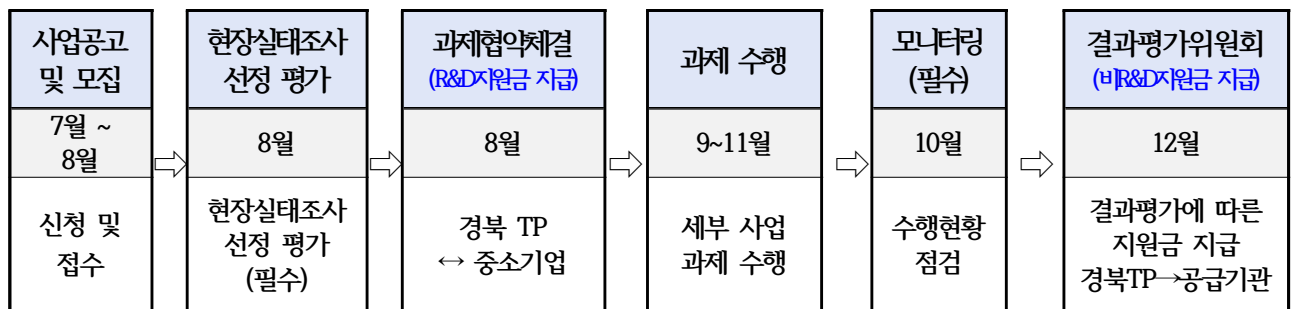
※ R&D, 비R&D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 할 수 있음

※ 기업 부담금 : **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 부담**

※ R&D :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(기업부담)

※ 비R&D :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원

나. 추진일정



※ 선정(발표)평가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: 발표평가

III

지원대상

가.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 및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

※ 종사자수 20인 미만 : 4대보험가입자명부 상 건강보험 가입 직원 수 20인 미만

※ 제조업 :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**영천 관내 공장등록증**을 보유
단,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
(제조면적 500㎡이하,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 기재 확인)

*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

※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, ‘중소기업확인서’ 제출

나.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(대학)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우대 지원

다. 스타트업·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해 **벤처기업 우대 지원**

(‘벤처기업확인서’ 제출 필수)

라. 사전지원 제외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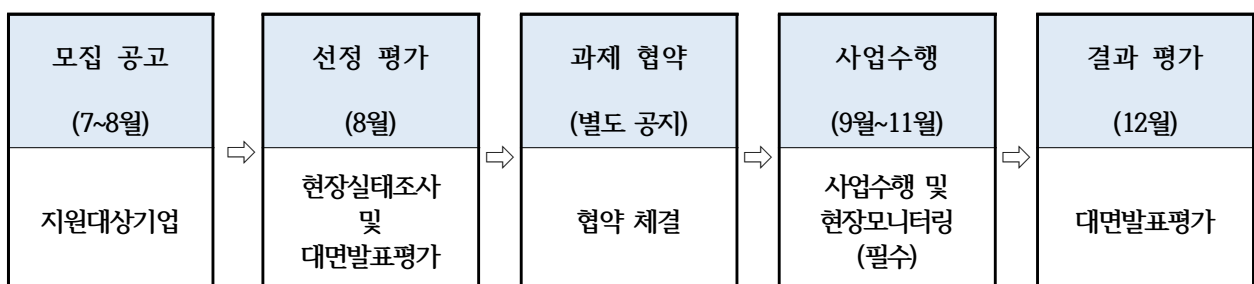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③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(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)
- ④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인 기업
 - *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 -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
- ⑧ **제출서류(영천시내 공장등록증 관련, 신청서 등) 미비기업**

IV 세부지원내용

가. R&D 사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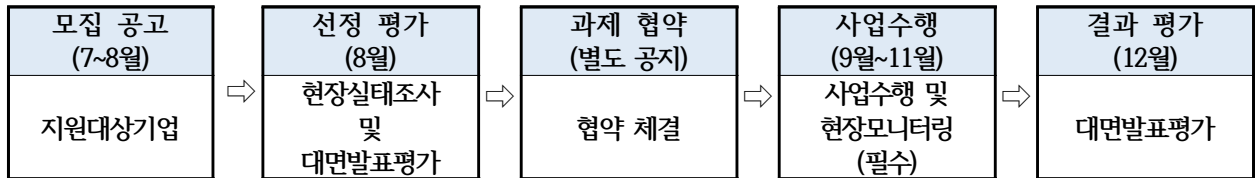
□ Scale-up R&D

- 1) 지원 내용 : 아이디어 단계의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
- 2) 지원 대상 : 선정 후 협약 기업 단독
- 3) 지원금 : 최대 50,000천원(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 기업 부담)
- 4) 추진 절차



□ 상용화 R&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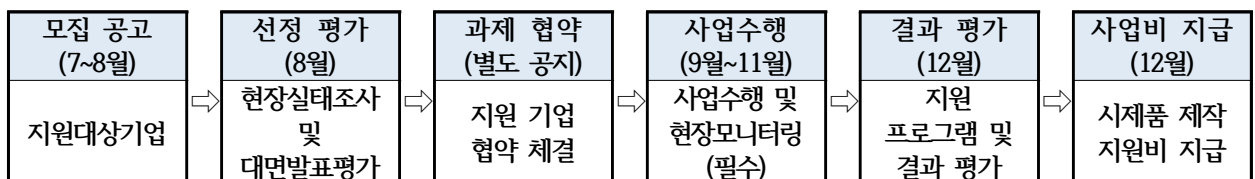
- 1) 지원 내용 : 보유중인 기술(제품)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기술개발 과제
- 2) 지원 대상 : 선정 후 협약 기업 단독
- 3) 지원금 : 최대 35,000천원(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 기업 부담)
- 4) 추진 절차



나. 비R&D 사업 지원

□ 시제품 제작

- 1) 지원 내용 : 영천시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, 시험·인증, 특허 등 지원
- 2) 지원 대상 : 선정 후 협약 기업 단독
- 3) 지원금 : 최대 20,000천원(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 기업 부담)
- 4) 추진절차



V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(1차) 사전 검토

- 1) (사전검토) 既개발 및 既지원 중복성 여부
 - ※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
 - ※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함
- 2)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
- 3)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, 과제책임자 자격, 기술개발능력, 사업화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현장검토
- 4) (현장실태조사) 사업 관련 제조 인프라, 사업 추진 조직 체계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

나. (2차) 선정평가 (대면발표평가)

- 1) 현장실태조사결과,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, 과제책임자의 대면발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,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기업 및 과제를 선정
- 2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지원 건수 내 “최종 선정” 함.
- 3)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 할 수 있음
- 4) “최종선정” 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(과제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시, 70점 이상인 과제들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

☒ R&D 평가 항목 (대면발표평가)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구분	평가항목	주요평가내용	배점					평점
사업추진 목표 및 필요성 (60)	필요성	○ 사업 결과물의 필요성 및 차별성	20	16	12	8	4	
	목표의 명확성	○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(10) ○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(10)	20	16	12	8	4	
	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	○ 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(10) ○ 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(10)	20	16	12	8	4	
사업추진 체계 (20)	추진의지 및 준비상황	○ 지원 기업의 추진 의지 및 준비상황	10	8	6	4	2	
	사업비의 적정성	○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(총사업비, 기업부담액, 세부예산의 적정성)	10	8	6	4	2	
사업화 전략 및 성과 (20)	고용 효과	○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·유지 가능성	10	8	6	4	2	
	지역경제 기여도	○ 매출(국내매출, 수출) 향상 가능성(5) ○ 수입대체효과,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(5)	10	8	6	4	2	
소 계 (100점)								
가점 사항 (20)	○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		○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(대학)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(+5점)					
	○ 종사인원 소재지 영천시 여부		○ 종사인원 90% 이상 영천시 거주시 (+5점)					
	○ 벤처기업 여부		○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(+10점)					
합계 (총 120점 만점)								

☑ 비R&D 평가 항목 (대면발표평가)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 구분	평가항목	주요평가내용	배점					평점
목표 및 필요성 (30)	목표대비 타당성	◦ 사업수행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었는가?	15	12	9	6	3	
	사업추진 의 필요성	◦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수행의 필요성이 있는가?	15	12	9	6	3	
추진계획 적정성 (40)	추진계획의 타당성	◦ 추진일정 수립이 현실적인가? ◦ 목표 대비 일정 계획이 적절한가?	20	16	12	8	4	
	사업비구성의 적정성	◦ 총 사업비(지원금)의 규모는 적절한가? ◦ 지원사업비 및 기업부담금 도출 근거가 적절한가?	20	16	12	8	4	
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 (30)	활용계획	◦ 사업결과물 활용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?	10	8	6	4	2	
	부가가치 증대	◦ 부가가치 증대는 실현 가능하고, 기업 성장 (시장규모, 점유율, 매출액 등)에 기여할 수 있는가?	10	8	6	4	2	
	파급효과	◦ 사업화 성공시 기술, 경제, 사회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?	10	8	6	4	2	
소 계 (100점)								
가점 사항 (20)	◦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		◦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(대학)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(+5점)					
	◦ 종사인원 소재지 영천시 여부		◦ 종사인원 90% 이상 영천시 거주시 (+5점)					
	◦ 벤처기업 여부		◦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(+10점)					
합계 (총 120점 만점)								

다. 최종 결과평가 (대면발표평가)

1) (평가위원회 평가)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

※ 평가점수 : 최우수(90점), 보통(80점), 성실수행(70점), 불성실수행(70점 미만)

2) R&D :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“인정” 또는 “환수” (전액 or 일부)

3) 비R&D :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“지급” 또는 “미지급”

4) 최종 결과평가 항목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평가 지표	평점
목표달성도 (60)	목표대비 달성정도(30)	최종 사업 성과 목표 등은 충분히 달성되었는가?	
	사업추진의 적정성(30)	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사업 추진 절차 및 수행의 적정성이 있는가?	
사업비 적정성(20)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(20)	기업부담금을 부담하였고 당초 목표와 동일한 사업비를 사용하는가?	
활용 계획 및 성과(20)	활용 계획 및 성과(20)	사업화는 실현 가능하고, 기업 성장(매출액, 고용창출 등)에 기여할 수 있는가?	
합 계 (총 100점 만점)			

- 5) 사업비 환수 및 지급 불허 : 평가위원회에서 “불성실수행” 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소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불허할 수 있다

※ “불성실수행” : 최종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과제로서, 최종보고서 미제출,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, 수행결과의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등

- 6) 결과평가위원회에서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 지원기업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,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.

VI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가. 중간 현장 모니터링(진도점검)

- 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- 2)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함
- 3) 모니터링 결과가 미비한 경우 보완 및 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.

나.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

- 1) (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 소유로 함
- 2) (사후관리)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게 보고함
※ 성과확산조사(3년) 미응답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 적용
- 3) 기술료 : R&D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기술료 면제

VII 사업 운영관리

가. 사업비 구성 :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(현금) 포함한 금액으로 함

- 1)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80% 이내에서 지원,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20%(현금) 이상으로 함
- 2) 사업 운영과 사업비 사용 등은 공고문, 사업계획서 양식, 『사업비 사용 지침』 및 『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』을 따름

나. 협약의 체결 및 수행결과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

- 1) (협약 준비)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며, 수정사업계획서를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
- 2) (협약 체결)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
- 3) (R&D사업비 지급)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(영천시 보조금)를 선지급 함
※ 선지급 건에 관하여서는 ‘보증보험증권’ 제출 후 지급(R&D 분야)
- 4) (비R&D사업비 지급) 비R&D 지원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이 완료되고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를 주관기관이 공급기업에 지급하나, 시험·인증지원 등은 필요에 따라 선지급이 사유가 있을 시 일부 선지급 할 수 있음

다. 사업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

- 1) (사업비 사용실적 제출) R&D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외부 지정회계법인에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(회계감사비용은 별도 지원)
- 2) (최종보고서 제출)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함
- 3) (사업비 정산결과 통보)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(인정금액, 불인정금액, 환수금액, 반납 금액 등)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함

VIII

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6. 07. 29.(수) ~ 2026. 08. 14.(금) 18:00 * 마감일 엄수

나. 제출서류

1) R&D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수	① (서식1) R&D 사업계획서(※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)	1부
	② (서식2) 신용상태조회 동의서	1부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	1부
	④ (서식4) 개인정보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1부
	⑤ (서식5) 신청자격 적정확인서	1부
	⑥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원	각 1부
	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
	⑧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, 건축물관리대장 등 (※미제출시 사전 지원 제외)	1부
	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(※미납 금액 발생시 지원 제외)	1부
	⑩ 최근 3년(23~25년)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(https://smart.gbtp.or.kr/login) 기업분석보고서 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	각 1부
해당시	⑪ 벤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)	1부
	⑫ (서식6)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	1부
	⑬ (서식7) 연구용역 계획서	1부
	⑭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1부
	⑮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메인비즈, ISO등	1부

※ ⑥, ⑦, ⑧, ⑨ 서류 제출시 공고일자 이후 최신자료 제출 (필수)

2) 비R&D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수	① (서식1) 비R&D 사업계획서(※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)	1부
	② (서식2) 신용상태조회 동의서	1부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	1부
	④ (서식4) 개인정보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1부
	⑤ (서식5) 신청자격 적정확인서	1부
	⑥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원	각 1부
	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
	⑧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, 건축물관리대장 등 (※미제출시 사전 지원 제외)	1부
	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(※미납 금액 발생시 지원 제외)	각 1부
	⑩ 최근 3년(23~25년)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(https://smart.gbtp.or.kr/login) 기업분석보고서 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	1부
해당시	⑪ 벤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)	1부
	⑫ (서식6)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	1부
	⑬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1부
	⑭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메인비즈, ISO등	1부

※ ⑥, ⑦, ⑧, ⑨ 서류 제출시 공고일자 이후 최신자료 제출 (필수)

3) 제출서류별 각각 파일명 작성 방법 (필수작성)

(예시) 1-R&D 사업계획서-주식회사0000, 2-신용상태조회 동의서-주식회사0000, 3-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-주식회사0000,.....)

다. 접수방법 :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록 접수

* 접수기간내 홈페이지 등록만 인정 됩니다. 이메일 접수는 불인정입니다.

* 파일 제목 :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(R&D / 비R&D 구분 선택) 지원 신청(주)000업체명 (필수 작성)

문의처

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
박진우 수석연구원(☎054-339-3351)

※ 참고사항

가. 사업에 참여하는 자(지원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나. R&D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
다. [사업비=지원금]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·현물을 포함한 금액

- 부품,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품목은 사업비 계상 불가
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20%이상을 현금으로 계상,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
-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,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
(비R&D는 인건비 계상 불가)
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별도 부담(R&D 분야)
-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
- (R&D)협약체결 → 민간부담금 입금(기업) → 사업비(영천시 보조금) 선지급(경북TP→기업)
- (비R&D)협약체결 → 사업수행(기업) → 결과평가 후 사업비 지급(경북TP→공급기업)

라.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
마. [모니터링 및 진도점검]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

바. [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]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함

사. [사후관리]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주관기관에 보고